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 대학교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6. 2. 00.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원 1명(별정직 고위 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행정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국립공주대학교 부설특수학교에 직업 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방호·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9급 3명, 특수교사 7명), 경상국립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영양·식생활 교육 확대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영양교사 1명) 및 국립대학의 첨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0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8명, 조교 15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경남도립거창대학을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5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47명, 조교 18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으로 편입된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의 행정·재정적 운영 지원과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 소관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41명(4급 3명, 6급 14명, 7급 12명, 8급 12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2명, 9급 7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존 전남도립대학교가 통합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③ 기존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이 통합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26,982”를 “27,009”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0,825”를 “20,843”으로 하며, 대학 계 “19,092”를 “19,102”로 하고, 총장 “37”을 “36”으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6,180”을 “16,191”로 하며, 특수학교 계 “378”을 “385”로 하고,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362”를 “369”로 하며,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86”을 “87”로 하고, 영양교사 “30”을 “31”로 하며, 별정직 계 “27”을 “26”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8”을 “17”로 하며, 일반직 계 “6,130”을 “6,140”으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을 “4”로 하며, 수의주사 “10”을 “12”로 하고, 행정주사보 “615”를 “616”으로 하며, 공업주사보 “156”을 “155”로 하고, 보건주사보 “8”을 “10”으로 하며, 식품위생주사보 “13”을 “14”로 하고, 시설주사보 “66”을 “65”로 하며, 보건서기 “10”을 “12”로 하고, 행정서기보 “596”을 “602”로 하며, 방호서기보 “17”을 “19”로 하고,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8”을 “9”로 하며, 위생서기보 “56”을 “57”로 하고, 통신운영서기보 “2”를 “1”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5”를 “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7”을 “3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982”를 “27,009”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0,825”를 “20,843”으로 하며, 대학 계 “19,092”를 “19,102”로 하고, 총장 “37”을 “36”으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6,180”을 “16,191”로 하며, 특수학교 계 “378”을 “385”로 하고,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362”를 “369”로 하며,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86”을 “87”로 하고, 영양교사 “30”을 “31”로 하며, 별정직 계 “27”을 “26”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8”을 “17”로 하며, 일반직 계 “6,130”을 “6,140”으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을 “4”로 하며, 수의주사 “10”을 “12”로 하고, 행정주사보

“609”를 “610”으로 하며, 공업주사보 “156”을 “155”로 하고, 보건주사보 “8”을 “10”으로 하며, 식품위생주사보 “13”을 “14”로 하고, 시설주사보 “65”을 “64”로 하며, 보건서기 “10”을 “12”로 하고, 행정서기보 “596”을 “602”로 하며, 방호서기보 “17”을 “19”로 하고,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8”을 “9”로 하며, 위생서기보 “56”을 “57”로 하고, 통신운영서기보 “2”를 “1”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5”를 “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6”을 “31”로 한다.

별표 2 중 국립강릉원주대학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국립강릉원주대학교란을 삭제하고, 강원대학교란, 경북대학교란, 경상국립대학교란, 국립공주대학교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란, 부산대학교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란, 전북대학교란, 제주대학교란, 충남대학교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란, 국립한밭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대학교	1,755	428	2,183
경북대학교	1,665	342	2,007
경상국립대학교	1,306	363	1,669
국립공주대학교	796	223	1,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33	219	452
부산대학교	1,595	335	1,93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89	152	641
전북대학교	1,338	309	1,647

제주대학교	862	265	1,127
충남대학교	1,189	255	1,44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385	138	523
국립한밭대학교	346	103	449
합 계	20,843	6,166	27,009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한시정원) (생략)	제5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기존 전남도립대학교가 통합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신설>	③ 기존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이 통합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26,982	27,009	+27
교육공무원 계	20,825	20,843	+18
대학 계	19,092	19,102	+10
총장	37	36	-1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6,180	16,191	+11
·	·	·	
·	·	·	
특수학교 계	378	385	+7
·	·	·	
·	·	·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362	369	+7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86	87	+1
·	·	·	

영양교사	<u>30</u>	<u>31</u>	+1
.	.	.	
.	.	.	
별정직 계	<u>27</u>	<u>26</u>	-1
고위공무원단	<u>18</u>	<u>17</u>	-1
.	.	.	
일반직 계	<u>6,130</u>	<u>6,140</u>	+10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3</u>	<u>4</u>	+1
.	.	.	
.	.	.	
수의주사	<u>10</u>	<u>12</u>	+2
.	.	.	
.	.	.	
행정주사보	<u>615</u>	<u>616</u>	+1
.	.	.	
.	.	.	
공업주사보	<u>156</u>	<u>155</u>	-1
.	.	.	
.	.	.	
보건주사보	<u>8</u>	<u>10</u>	+2
.	.	.	

.	.	.	
식품위생주사보	<u>13</u>	<u>14</u>	+1
.	.	.	
.	.	.	
시설주사보	<u>66</u>	<u>65</u>	-1
.	.	.	
.	.	.	
보건서기	<u>10</u>	<u>12</u>	+2
.	.	.	
.	.	.	
행정서기보	<u>596</u>	<u>602</u>	+6
.	.	.	
.	.	.	
방호서기보	<u>17</u>	<u>19</u>	+2
.	.	.	
.	.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8</u>	<u>9</u>	+1
.	.	.	
.	.	.	
위생서기보	<u>56</u>	<u>57</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5</u>	<u>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7</u>	<u>32</u>	<u>-5</u>
·	·	·	
·	·	·	

[별표 1의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6,982</u>	<u>27,009</u>	+27
교육공무원 계	<u>20,825</u>	<u>20,843</u>	+18
대학 계	<u>19,092</u>	<u>19,102</u>	+10
총 장	<u>37</u>	<u>36</u>	-1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	<u>16,180</u>	<u>16,191</u>	+11
·	·	·	
·	·	·	
특수학교 계	<u>378</u>	<u>385</u>	+7
·	·	·	
·	·	·	
교사(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 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 사를 포함한다)	<u>362</u>	<u>369</u>	+7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u>86</u>	<u>87</u>	+1
·	·	·	
영양교사	<u>30</u>	<u>31</u>	+1

·	·	·		식품위생주사보	<u>13</u>	<u>14</u>	+1
·	·	·		·	·	·	
별정직 계	<u>27</u>	<u>26</u>	-1	·	·	·	
고위공무원단	<u>18</u>	<u>17</u>	-1	시설주사보	<u>65</u>	<u>64</u>	-1
·	·	·		·	·	·	
일반직 계	<u>6,130</u>	<u>6,140</u>	+10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3</u>	<u>4</u>	+1	보건서기	<u>10</u>	<u>12</u>	+2
·	·	·		·	·	·	
·	·	·		·	·	·	
수의주사	<u>10</u>	<u>12</u>	+2	행정서기보	<u>596</u>	<u>602</u>	+6
·	·	·		·	·	·	
·	·	·		·	·	·	
행정주사보	<u>609</u>	<u>610</u>	+1	방호서기보	<u>17</u>	<u>19</u>	+2
·	·	·		·	·	·	
·	·	·		·	·	·	
공업주사보	<u>156</u>	<u>155</u>	-1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8</u>	<u>9</u>	+1
·	·	·		·	·	·	
·	·	·		·	·	·	
보건주사보	<u>8</u>	<u>10</u>	+2	위생서기보	<u>56</u>	<u>57</u>	+1
·	·	·		·	·	·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5</u>	<u>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6</u>	<u>31</u>	<u>-5</u>
·	·	·	
·	·	·	

[별표 4]

국립의 각급 학교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5조 관련)

1. 제5조 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구분	일반직		계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가. 강원대학교	1	1	2
나. 경북대학교	1	1	2
다. 경상국립대학교	1	1	2
라. 부산대학교	1	1	2
마. 전남대학교	1	1	2
바. 전북대학교	1	1	2
사. 제주대학교	1	1	2
아. 충남대학교	1	1	2
자. 충북대학교	1	1	2
합계	9	9	18

2. 제5조 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구분	직 급 별	계
가. 국립목포대학교	총계	67
	교육공무원 계	53
	대학 계	53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8
	조교	15

	일반직 계	14
	서기관	1
	행정주사	3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2
	사서주사보	1
	간호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1
	전산서기	1
	공업서기	1
	운전서기	1
나. 국립창원대학교	총계	92
	교육공무원 계	65
	대학 계	65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47
	조교	18
	일반직 계	27
	서기관	2
	행정주사	8
	시설주사	2
	행정주사보	4
	시설주사보	1

	사서주사보	2
	행정서기	2
	시설서기	1
	전산서기	2
	공업서기	1
	운전서기	2